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30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감면대상 사업연도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 사업 개시연도에 대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2항 중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u>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	제2조(적용시한)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u>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p> <p>제12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p> <p>제12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 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